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5년 10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4% 증가(전월대비 1.3%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40.3%), 자동차(7.5%) 등에서 증가하였고 기계장비(-10.0%), 기타운송장비(-12.2%)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전월대비 1.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1.3%), 전문·과학·기술(-5.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5.9%), 금융·보험(5.6%), 부동산·임대(5.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전월대비 0.2% 증가).

### ◆ 2015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9.3%),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6.5%),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2%)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함(전월대비 3.1%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항공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함(전월대비 0.8%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연구소·관공서, 발전·송전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함.

◆ 2015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1% 상승)

-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2(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함(전월대비 0.1%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0%), 음식·숙박(2.5%),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6.1)과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07.45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함(전월대비 0.2%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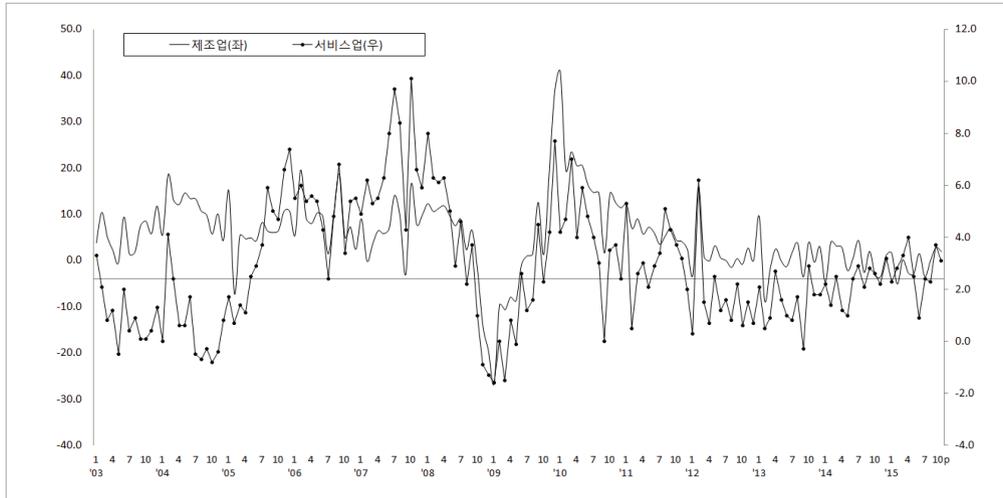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p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3.1	-0.9	-1.5	-0.2	1.5	-1.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3.3	-1.0	-1.4	-0.4	1.9	-1.2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3.4	-0.7	-1.3	0.8	2.9	-1.4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4.4	-0.7	-0.1	1.0	2.9	-1.3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2.0	-0.6	-2.5	0.5	2.9	-1.6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6	2.8	2.5	2.8	3.1	0.2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0.2	1.6	2.9	3.2	8.3	3.1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8.9	8.4	5.2	10.0	12.4	-0.8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0	0.6	0.5	0.7	1.0	-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11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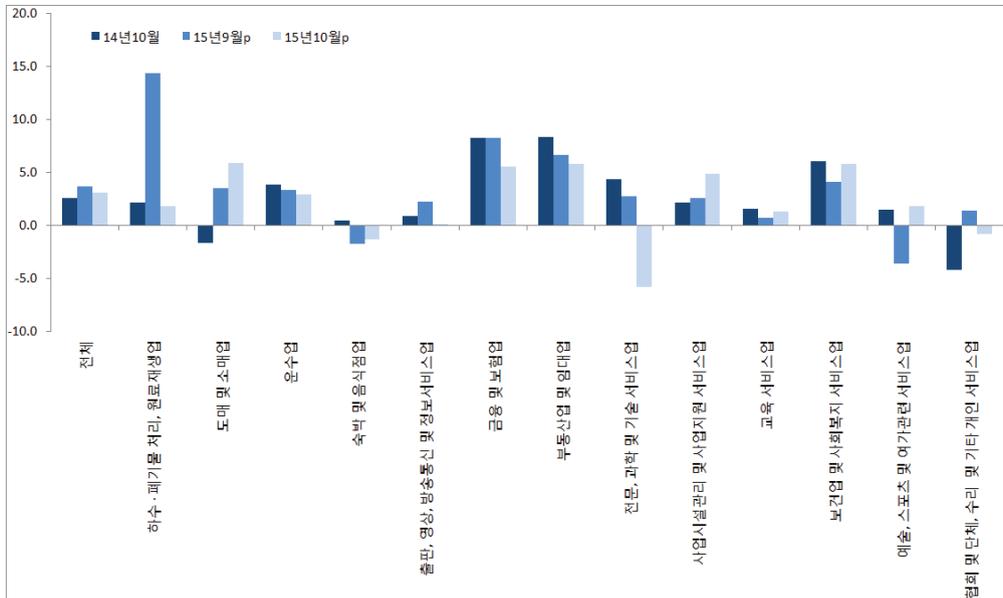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9월, 10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10), 『201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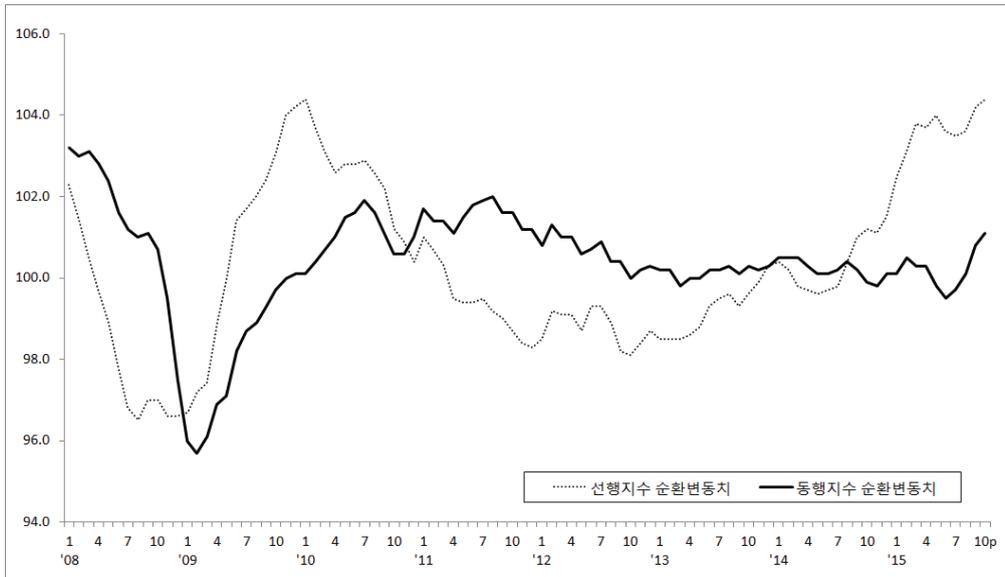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고용 동향

###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유지

- 2015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0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6천 명(1.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587천 명으로 98천 명(0.6%) 증가하였고, 여성은 11,495천 명으로 198천 명(1.8%) 증가하였음.
- 2015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7%)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성(52.2%)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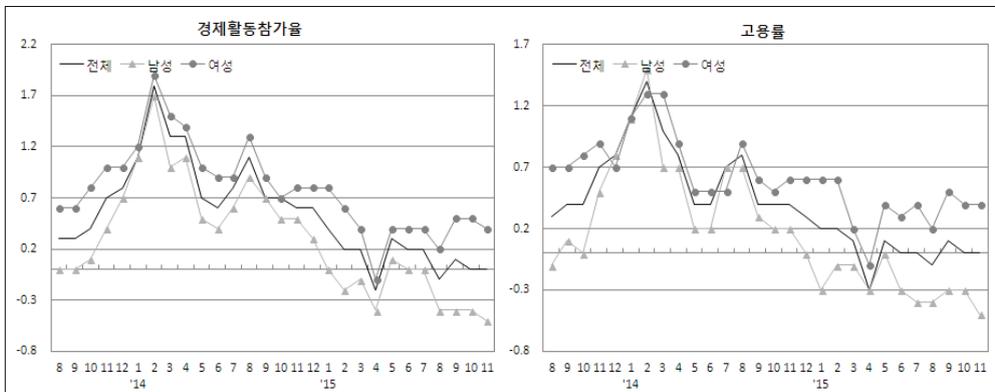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25,945 ( 3.4)	26,767 ( 2.4)	26,810 ( 2.4)	26,622 ( 2.1)	26,786 ( 2.1)	26,356 ( 1.6)	27,140 ( 1.4)	27,166 ( 1.3)	27,137 ( 1.2)	27,082 ( 1.1)
참가율	61.3	63.1	63.0	62.4	62.7	61.5	63.2	63.0	62.9	62.7
취업자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968 ( 1.7)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298 ( 1.3)	26,253 ( 1.1)
고용률	58.8	60.8	60.9	60.4	60.8	59.0	60.7	60.9	60.9	60.8
실업자	1,031	977	884	854	818	1,089	1,042	929	839	829
실업률	4.0	3.7	3.3	3.2	3.1	4.1	3.8	3.4	3.1	3.1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1.4)	15,760 (-1.4)	16,066 (-0.6)	15,902 (-0.7)	16,469 ( 0.4)	15,835 ( 1.0)	15,921 ( 1.0)	16,012 ( 1.1)	16,099 ( 1.2)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12), 『2015년 11월 고용동향』.

- 2015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7천 명(1.2%)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0천 명(3.1%)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0.3%)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0천 명(14.9%)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56천 명으로 131천 명(-3.1%) 감소하였음.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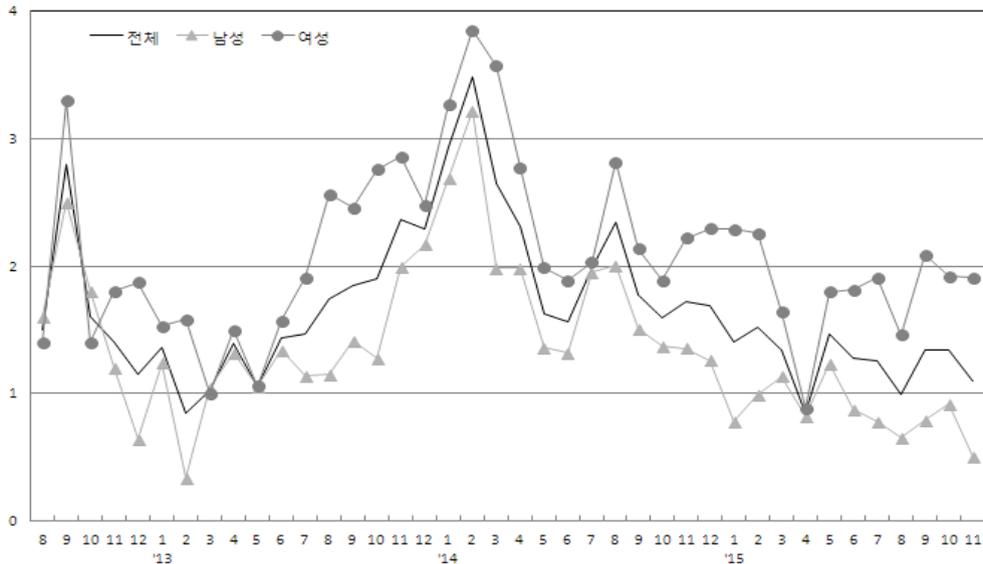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11월 중 취업자는 26,2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5천 명(1.1%)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1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9천 명(1.9%)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11월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남성의 고용률은 71.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11월 중 실업자는 8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1.3%)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남성 실업자는 5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4.5%)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3.4%) 감소하였음.
  -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15~29세, 5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11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90천 명, 2.3%), 50~59세(140천 명, 2.4%), 60세 이상(109천 명, 2.9%)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50천 명, -0.9%), 40~49세(-4천 명, -0.1%)에서 감소함.
- － 교육정도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졸(143천 명, 1.4%), 대졸 이상(377천 명, 3.4%)에서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236천 명, -5.1%)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968 ( 1.7)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298 ( 1.3)	26,253 ( 1.1)
15~29세	3,840 ( 2.6)	3,843 ( 1.4)	3,941 ( 2.7)	3,855 ( 1.5)	3,865 ( 1.3)	3,872 ( 0.8)	3,933 ( 2.3)	3,991 ( 1.3)	3,951 ( 2.6)	3,955 ( 2.3)
30~39세	5,672 (-0.1)	5,721 (-0.7)	5,741 (-0.1)	5,722 (-0.5)	5,730 (-0.6)	5,671 ( 0.0)	5,665 (-1.0)	5,681 (-1.0)	5,676 (-0.8)	5,680 (-0.9)
40~49세	6,645 ( 1.5)	6,704 ( 0.5)	6,678 ( 0.2)	6,700 ( 0.1)	6,719 ( 0.1)	6,598 (-0.7)	6,690 (-0.2)	6,679 ( 0.0)	6,744 ( 0.5)	6,715 (-0.1)
50~59세	5,684 ( 6.0)	5,878 ( 4.0)	5,891 ( 3.8)	5,926 ( 3.3)	5,954 ( 3.3)	5,861 ( 3.1)	6,016 ( 2.3)	6,036 ( 2.5)	6,062 ( 2.1)	6,094 ( 2.4)
60세 이상	3,072 ( 7.6)	3,643 ( 5.5)	3,676 ( 5.5)	3,565 ( 6.0)	3,700 ( 6.4)	3,265 ( 6.3)	3,793 ( 4.1)	3,850 ( 4.7)	3,867 ( 3.6)	3,809 ( 2.9)
중졸 이하	4,210 (-3.1)	4,664 (-4.8)	4,614 (-4.0)	4,472 (-3.5)	4,600 (-3.2)	4,070 (-3.3)	4,495 (-3.6)	4,461 (-3.3)	4,455 (-4.1)	4,364 (-5.1)
고졸	9,908 ( 2.6)	10,060 ( 2.1)	10,224 ( 3.3)	10,229 ( 3.0)	10,249 ( 2.9)	10,117 ( 2.1)	10,244 ( 1.8)	10,317 ( 0.9)	10,344 ( 0.9)	10,392 ( 1.4)
대졸 이상	10,795 ( 6.0)	11,067 ( 4.7)	11,089 ( 3.6)	11,067 ( 2.7)	11,119 ( 2.8)	11,080 ( 2.6)	11,360 ( 2.6)	11,458 ( 3.3)	11,499 ( 4.0)	11,496 ( 3.4)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12), 『2015년 11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5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58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03천 명(2.6%)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6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8천 명(-3.2%)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791천 명으로 496천 명(4.0%), 임시근로자는 5,294천 명으로 175천 명(3.4%)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499천 명으로 168천 명(-10.1%)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524천 명으로 152천 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1,146천 명으로 65천 명(-5.4%) 감소하였음.
- 2015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1천 명(7.4%)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31천 명으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임.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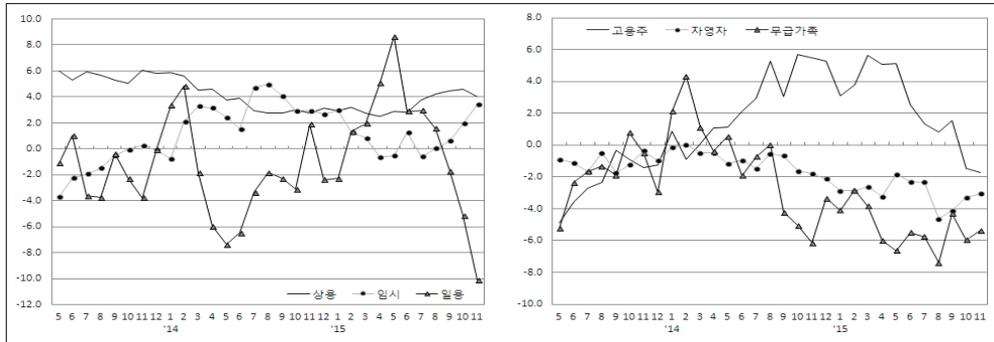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968 ( 1.7)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298 ( 1.3)	26,253 ( 1.1)
비임금근로자	6,597 ( 0.3)	6,984 (-0.3)	7,047 ( 0.0)	6,799 (-0.8)	6,887 (-1.0)	6,509 (-1.3)	6,871 (-1.6)	6,836 (-3.0)	6,770 (-3.4)	6,669 (-3.2)
자영업자	5,512 (-0.1)	5,712 (-0.2)	5,760 ( 0.3)	5,625 ( 0.1)	5,676 ( 0.2)	5,463 (-0.9)	5,675 (-0.6)	5,623 (-2.4)	5,571 (-2.8)	5,524 (-2.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07 ( 0.0)	1,553 ( 1.4)	1,567 ( 3.7)	1,574 ( 5.5)	1,580 ( 5.5)	1,570 ( 4.2)	1,619 ( 4.2)	1,587 ( 1.3)	1,560 (-1.5)	1,553 (-1.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5 (-0.2)	4,159 (-0.9)	4,192 (-0.9)	4,051 (-1.8)	4,096 (-1.8)	3,893 (-2.8)	4,056 (-2.5)	4,037 (-3.7)	4,011 (-3.3)	3,971 (-3.1)
무급가족종사자	1,085 ( 2.5)	1,272 (-0.6)	1,287 (-1.7)	1,175 (-4.9)	1,211 (-6.1)	1,046 (-3.6)	1,195 (-6.1)	1,212 (-5.8)	1,199 (-6.0)	1,146 (-5.4)
임금근로자	18,316 ( 4.0)	18,806 ( 2.6)	18,880 ( 2.8)	18,968 ( 2.6)	19,081 ( 2.7)	18,758 ( 2.4)	19,227 ( 2.2)	19,401 ( 2.8)	19,529 ( 3.1)	19,584 ( 2.6)
상용근로자	11,985 ( 5.3)	12,175 ( 4.1)	12,181 ( 2.8)	12,280 ( 3.0)	12,295 ( 2.8)	12,341 ( 3.0)	12,507 ( 2.7)	12,686 ( 4.1)	12,801 ( 4.6)	12,791 ( 4.0)
임시근로자	4,835 ( 1.5)	5,063 ( 2.4)	5,153 ( 4.6)	5,076 ( 2.9)	5,119 ( 2.9)	4,918 ( 1.7)	5,066 ( 0.1)	5,155 ( 0.0)	5,208 ( 2.0)	5,294 ( 3.4)
일용근로자	1,496 ( 2.1)	1,567 (-6.6)	1,546 (-2.5)	1,612 (-1.2)	1,667 ( 1.9)	1,500 ( 0.3)	1,654 ( 5.5)	1,560 ( 0.9)	1,520 (-5.1)	1,449 (-10.1)
36시간 미만	3,593 (-35.4)	3,397 (-29.5)	5,229 ( 2.9)	3,659 ( 7.8)	3,638 ( 6.6)	3,689 ( 2.7)	3,661 ( 7.8)	4,848 (-7.3)	3,603 ( 3.0)	3,909 ( 7.4)
36시간 이상	20,829 (15.1)	22,090 ( 9.3)	20,184 ( 1.9)	21,779 ( 0.7)	22,020 ( 1.0)	21,091 ( 1.3)	22,120 ( 0.1)	20,895 ( 3.5)	22,393 ( 1.3)	22,031 ( 0.0)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12), 『2015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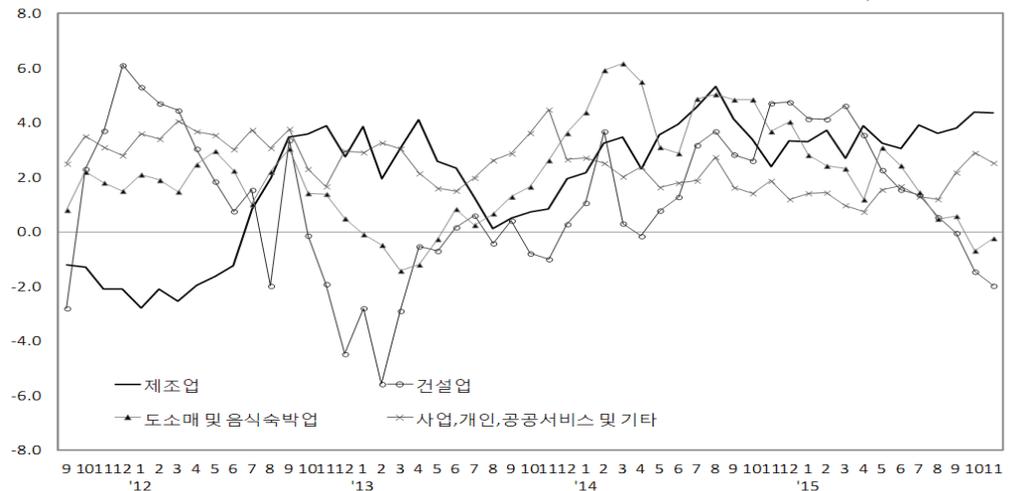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지속

- 2015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90천 명, 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3천 명, 2.5%), 전기·운수·통신·금융업(74천 명, 2.5%)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69천 명, -11.2%), 건설업(-37천 명, -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천 명, -0.2%)에서는 감소함.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표 5〉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산업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968 ( 1.7)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298 ( 1.3)	26,253 ( 1.1)
농림어업	1,179 ( 1.0)	1,631 (-3.3)	1,603 (-7.0)	1,395 (-7.2)	1,506 (-5.3)	1,092 (-7.4)	1,505 (-7.7)	1,494 (-6.8)	1,484 (-7.7)	1,337 (-11.2)
제조업	4,279 ( 3.0)	4,319 ( 3.3)	4,346 ( 4.7)	4,374 ( 3.0)	4,355 ( 2.4)	4,418 ( 3.2)	4,466 ( 3.4)	4,511 ( 3.8)	4,552 ( 4.4)	4,545 ( 4.4)
전기·가스·증기·수도	80 (-1.2)	80 (-16.7)	83 (-13.5)	88 ( 0.0)	88 (-1.1)	91 (13.8)	91 (13.8)	92 (10.8)	97 (11.5)	98 (11.4)
하수, 원료재생·복원	80 (17.6)	90 (32.4)	90 (20.0)	89 (12.7)	93 (16.3)	89 (11.3)	89 (-1.1)	89 (-1.1)	86 (-2.3)	86 (-7.5)
건설업	1,683 ( 1.6)	1,813 ( 0.7)	1,833 ( 3.3)	1,854 ( 4.0)	1,874 ( 4.7)	1,756 ( 4.3)	1,857 ( 2.4)	1,844 ( 0.6)	1,824 (-1.5)	1,837 (-2.0)
도매 및 소매업	3,774 ( 4.4)	3,744 ( 2.6)	3,799 ( 4.1)	3,848 ( 3.4)	3,864 ( 3.6)	3,848 ( 2.0)	3,775 ( 0.8)	3,763 (-0.9)	3,724 (-2.4)	3,736 (-3.3)
운수업	1,418 ( 1.8)	1,408 (-0.4)	1,400 (-1.8)	1,402 (-1.3)	1,400 (-1.9)	1,402 (-1.1)	1,410 ( 0.1)	1,415 ( 1.1)	1,411 ( 1.1)	1,414 (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63 ( 7.5)	2,053 ( 6.2)	2,130 ( 6.5)	2,143 ( 5.7)	2,117 ( 3.7)	2,136 ( 3.5)	2,152 ( 4.8)	2,216 ( 4.0)	2,195 ( 2.3)	2,231 ( 5.4)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03 ( 2.8)	733 ( 5.2)	707 ( 1.1)	713 ( 3.6)	719 ( 4.1)	749 ( 6.5)	773 ( 5.5)	782 (10.6)	781 ( 1.1)	787 ( 9.5)
금융 및 보험업	854 ( 1.5)	847 (-3.3)	836 (-5.1)	813 (-5.1)	814 (-4.5)	788 (-7.7)	789 (-6.8)	787 (-5.9)	790 (-3.3)	795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7 ( 6.1)	496 ( 4.2)	516 ( 6.0)	512 ( 2.4)	510 ( 1.4)	514 ( 1.4)	535 ( 7.9)	539 ( 4.5)	550 ( 5.0)	551 ( 8.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24 (-1.3)	1,017 ( 0.4)	1,028 ( 1.4)	1,030 ( 0.8)	1,033 ( 0.6)	1,022 (-0.2)	1,029 ( 1.2)	1,064 ( 3.5)	1,056 ( 2.7)	1,086 ( 5.1)
사업서비스	1,165 ( 1.1)	1,192 (-1.2)	1,168 ( 0.2)	1,197 ( 2.5)	1,210 ( 3.7)	1,202 ( 3.2)	1,261 ( 5.8)	1,257 ( 7.6)	1,283 ( 8.8)	1,268 ( 4.8)
공공행정 등	925 ( 2.9)	1,001 ( 0.2)	980 (-1.1)	923 (-5.1)	950 (-4.3)	865 (-6.5)	960 (-4.1)	954 (-2.7)	962 ( 1.2)	997 ( 4.9)
교육 서비스업	1,760 ( 4.4)	1,811 ( 3.4)	1,827 ( 2.2)	1,829 ( 3.6)	1,838 ( 3.8)	1,802 ( 2.4)	1,803 (-0.4)	1,816 (-0.6)	1,871 ( 2.3)	1,833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69 ( 8.1)	1,709 ( 8.9)	1,745 ( 9.1)	1,749 ( 9.6)	1,774 ( 9.8)	1,694 ( 8.0)	1,776 ( 3.9)	1,795 ( 2.9)	1,822 ( 3.5)	1,823 ( 2.8)
예술·스포츠·여가	384 ( 1.6)	380 (-3.3)	403 ( 0.8)	407 ( 2.5)	407 ( 1.2)	412 ( 7.3)	438 (15.3)	431 ( 6.9)	427 ( 4.7)	425 ( 4.4)
협회·단체·수리·기타	1,310 (-0.8)	1,319 ( 0.4)	1,295 ( 0.5)	1,273 (-4.0)	1,285 (-3.4)	1,267 (-3.3)	1,277 (-3.2)	1,276 (-1.5)	1,279 ( 0.4)	1,294 ( 0.7)
가구내 및 자가	130 (-26.1)	120 (-32.2)	111 (-36.9)	103 (-34.4)	105 (-32.7)	94 (-27.7)	85 (-29.2)	77 (-30.6)	71 (-31.1)	74 (-29.5)
국제 및 외국기관	11 (37.5)	13 (85.7)	16 (166.7)	17 (88.9)	18 (100.0)	18 (63.6)	17 (30.8)	20 (25.0)	20 (25.0)	19 ( 5.6)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15. 12), 『2015년 11월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9월 명목임금상승률 큰 폭 상승(전년동월대비 6.1% 상승)

- 2015년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537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8.1%p 상승한 6.1%임.
  - 2015년 9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755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6.2% 상승함. 이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증가율(17.8%)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함.
  - 특히 특별급여의 증가폭이 컸던 데는 추석명절효과에서 기인. 추석이 2014년에는 9월 초에 있어 8월 중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업체가 상당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추석이 9월 말에 있어 명절상여금이 9월에 지급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 9월 현재 전년동월과 동일함(3.1%).
  - 반면, 비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01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5년 1~9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3.4% 상승
  - 2015년 1~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278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1.3%p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463천 원, 3.2%)은 전년동평균대비 1.1%p 상승했으나 정액급여(3.1%)는 전년동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1,414천 원, 2.2%)은 전년동평균대비 1.7%p 상승함.
- 2015년 9월 실질임금상승률 또한 크게 상승(전년동월대비 5.5% 상승)
  - 2015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3.1%)에 비해 크게 상승함.

- 2015년 1~9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2.8% 상승함.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9월 평균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 5.3)	3,111 ( 3.9)	3,190 ( 2.5)	3,169 ( 2.1)	3,333 (-2.0)	3,278 ( 3.4)	3,537 ( 6.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 5.3)	3,299 ( 3.8)	3,378 ( 2.4)	3,356 ( 2.1)	3,538 (-2.4)	3,463 ( 3.2)	3,755 ( 6.2)
	정액급여	2,470 ( 5.5)	2,578 ( 4.4)	2,660 ( 3.2)	2,648 ( 3.2)	2,660 ( 3.1)	2,731 ( 3.1)	2,743 ( 3.1)
	초과급여	181 ( 1.0)	184 ( 1.7)	201 ( 9.3)	199 ( 9.3)	199 ( 10.1)	215 ( 8.3)	212 ( 6.7)
	특별급여	527 ( 5.8)	537 ( 1.8)	516 (-3.7)	509 (-5.7)	679 (-21.4)	518 ( 1.6)	800 ( 17.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 6.4)	1,377 ( 6.5)	1,387 ( 0.7)	1,384 ( 0.5)	1,339 (-1.7)	1,414 ( 2.2)	1,401 ( 4.6)	
소비자물가지수	106.3 ( 2.2)	107.8 ( 1.2)	109.0 ( 1.3)	109.1 ( 1.3)	109.4 ( 1.1)	109.7 ( 0.6)	110.0 ( 0.6)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0.7	-3.1	2.8	5.5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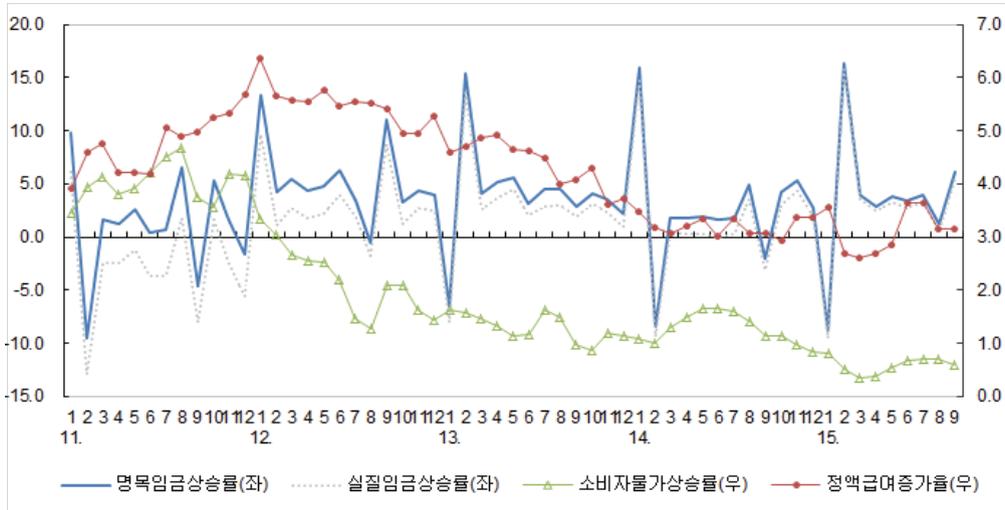
◆ 2015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4.0%

○ 2015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2014년 10월 인상률(4.4%)보다 0.4%p 하락함.

- 2015년 10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63.9%로 전년동월(51.5%)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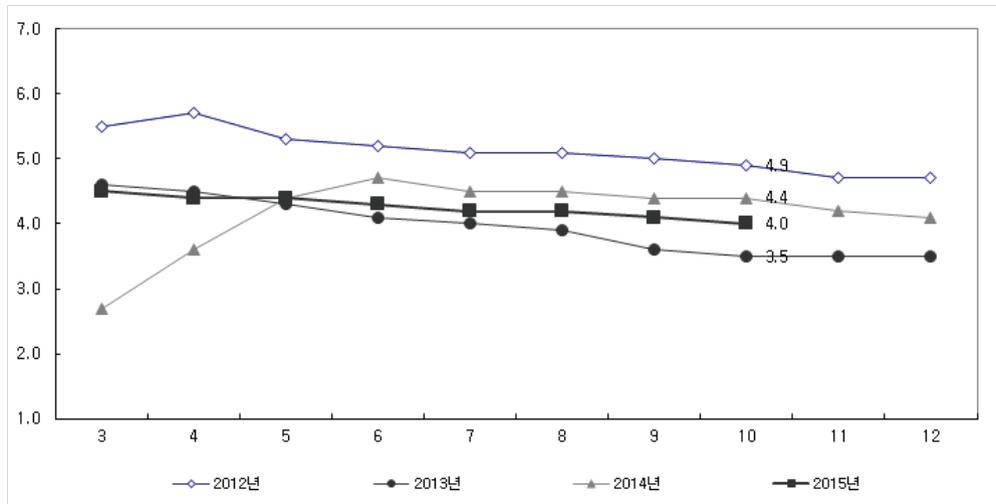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5년 9월 임금상승률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9.1%, 8,358천 원)임.
  - 그 다음으로 운수업(8.5%, 3,154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4%, 2,494천 원),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8.1%, 3,217천 원), 여가관련 서비스업(7.5%, 2,645천 원), 제조업(7.2%, 3,900천 원) 등이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한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가장 저조한 산업은 음식숙박업(0.7%, 1,983천 원)으로 나타남. 이와 더불어 평균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 2,993천 원)임.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 산업	3,111 ( 3.9)	3,190 ( 2.5)	3,169 ( 2.1)	3,333 (-2.0)	3,278 ( 3.4)	3,537 ( 6.1)
광업	3,557 ( 2.5)	3,480 (-2.1)	3,509 (-3.1)	3,767 (-5.1)	3,692 ( 5.2)	4,051 ( 7.5)
제조업	3,371 ( 4.7)	3,506 ( 4.0)	3,478 ( 3.7)	3,638 (-1.6)	3,580 ( 2.9)	3,900 ( 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 2.9)	5,554 ( 0.2)	5,491 ( 1.5)	7,016 (-3.3)	5,807 ( 5.8)	8,358 (19.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 3.3)	2,812 ( 2.5)	2,790 ( 2.7)	2,976 (-0.4)	2,911 ( 4.4)	3,217 ( 8.1)
건설업	2,414 ( 6.2)	2,497 ( 3.4)	2,482 ( 2.5)	2,579 ( 1.1)	2,585 ( 4.1)	2,669 ( 3.5)
도매 및 소매업	3,168 ( 1.5)	3,206 ( 1.2)	3,172 ( 0.7)	3,321 (-5.8)	3,245 ( 2.3)	3,525 ( 6.1)
운수업	2,732 ( 5.5)	2,805 ( 2.7)	2,757 ( 1.7)	2,907 (-0.7)	2,921 ( 5.9)	3,154 ( 8.5)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 1.9)	1,785 ( 0.7)	1,768 ( 0.5)	1,969 (-0.8)	1,812 ( 2.5)	1,983 ( 0.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 2.2)	3,905 (-0.8)	3,895 (-1.6)	4,092 (-1.0)	3,992 ( 2.5)	4,237 ( 3.5)
금융 및 보험업	5,058 ( 1.4)	5,234 ( 3.5)	5,201 ( 2.2)	5,633 ( 4.6)	5,502 ( 5.8)	5,876 ( 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 3.4)	2,323 ( 2.3)	2,301 ( 2.5)	2,359 ( 3.1)	2,471 ( 7.4)	2,543 ( 7.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 3.2)	4,419 ( 4.2)	4,352 ( 3.8)	4,559 (-7.9)	4,461 ( 2.5)	4,816 ( 5.6)
사업서비스업	1,883 ( 5.2)	1,924 ( 2.2)	1,904 ( 1.6)	1,951 (-0.6)	1,984 ( 4.2)	2,059 ( 5.5)
교육서비스업	3,261 ( 4.4)	3,375 ( 3.5)	3,443 ( 2.3)	3,560 ( 1.9)	3,572 ( 3.7)	3,774 (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 2.0)	2,700 ( 1.4)	2,673 ( 0.2)	2,900 ( 0.4)	2,766 ( 3.5)	2,993 ( 3.2)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 5.2)	2,398 ( 3.1)	2,384 ( 3.1)	2,460 (-0.8)	2,462 ( 3.2)	2,645 ( 7.5)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 1.0)	2,223 (-0.2)	2,300 (-3.1)	2,300 ( 3.5)	2,494 ( 8.4)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 건설업(3.5%, 2,669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5%, 4,237천 원), 금융 및 보험업(4.3%, 5,876천 원)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9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358천 원)이며, 반대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983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2015년 1~9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7.4%, 2,471천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업(5.9%, 2,921천 원), 금융 및 보험업(5.8%, 5,502천 원)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았음.
- 반면 도매 및 소매업(2.3%, 3,245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5%, 4,461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5%, 3,992천 원), 제조업(2.9%, 3,580천 원) 등 일부 산업은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3.4%)을 밑도는 1~2%대 상승률을 보임.
- 2015년 1~9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807천 원)이며, 반대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812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9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증가

○ 2015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함.

○ 2015년 9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함.

- 2015년 9월 기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크게 상승한 것은 추석명절효과로 인한 특별급여(중소규모 22.9%, 대규모 8.0%)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함.
- 한편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둔화함.

○ 2015년 9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1,260천 원인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한 1,418천 원으로 나타남.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9월 평균	9월	1~9월 평균	9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 체	3,111 ( 3.9)	3,190 ( 2.5)	3,169 ( 2.1)	3,333 (-2.0)	3,278 ( 3.4)	3,537 ( 6.1)
	상용임금총액	3,299 ( 3.8)	3,378 ( 2.4)	3,356 ( 2.1)	3,538 (-2.4)	3,463 ( 3.2)	3,755 ( 6.2)
	정액급여	2,578 ( 4.4)	2,660 ( 3.2)	2,648 ( 3.2)	2,660 ( 3.1)	2,731 ( 3.1)	2,743 ( 3.1)
	초과급여	184 ( 1.7)	201 ( 9.3)	199 ( 9.3)	199 (10.1)	215 ( 8.3)	212 ( 6.7)
	특별급여	537 ( 1.8)	516 (-3.7)	509 (-5.7)	679 (-21.4)	518 ( 1.6)	800 (17.8)
	비상용임금총액	1,377 ( 6.5)	1,387 ( 0.7)	1,384 ( 0.5)	1,339 (-1.7)	1,414 ( 2.2)	1,401 ( 4.6)
5~299인	소 계	2,764 ( 3.8)	2,836 ( 2.6)	2,814 ( 2.0)	2,971 (-0.1)	2,921 ( 3.8)	3,139 ( 5.7)
	상용임금총액	2,938 ( 3.7)	3,008 ( 2.4)	2,987 ( 2.0)	3,158 (-0.5)	3,091 ( 3.5)	3,336 ( 5.7)
	정액급여	2,433 ( 4.3)	2,504 ( 2.9)	2,493 ( 2.9)	2,505 ( 2.7)	2,565 ( 2.9)	2,563 ( 2.3)
	초과급여	160 ( 3.0)	172 ( 7.5)	170 ( 7.1)	170 ( 8.0)	182 ( 6.8)	180 ( 5.9)
	특별급여	345 (-0.3)	332 (-3.6)	324 (-6.2)	482 (-16.4)	344 ( 6.1)	593 (22.9)
	비상용임금총액	1,392 ( 7.0)	1,390 (-0.1)	1,385 (-0.4)	1,345 (-2.5)	1,418 ( 2.4)	1,418 ( 5.5)
300인 이상	소 계	4,447 ( 3.7)	4,678 ( 5.2)	4,633 ( 4.3)	4,928 (-2.4)	4,826 ( 4.2)	5,192 ( 5.4)
	상용임금총액	4,583 ( 3.6)	4,827 ( 5.3)	4,772 ( 4.4)	5,116 (-2.3)	4,979 ( 4.4)	5,408 ( 5.7)
	정액급여	3,093 ( 4.3)	3,272 ( 5.8)	3,245 ( 5.5)	3,302 ( 6.9)	3,404 ( 4.9)	3,453 ( 4.6)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07 (17.1)	316 (21.1)	350 (13.9)	336 ( 6.6)
	특별급여	1,220 ( 3.0)	1,239 ( 1.5)	1,220 (-1.2)	1,499 (-20.7)	1,225 ( 0.4)	1,618 ( 8.0)
	비상용임금총액	1,219 ( 0.8)	1,354 (11.1)	1,367 (11.1)	1,284 ( 6.7)	1,372 ( 0.3)	1,260 (-1.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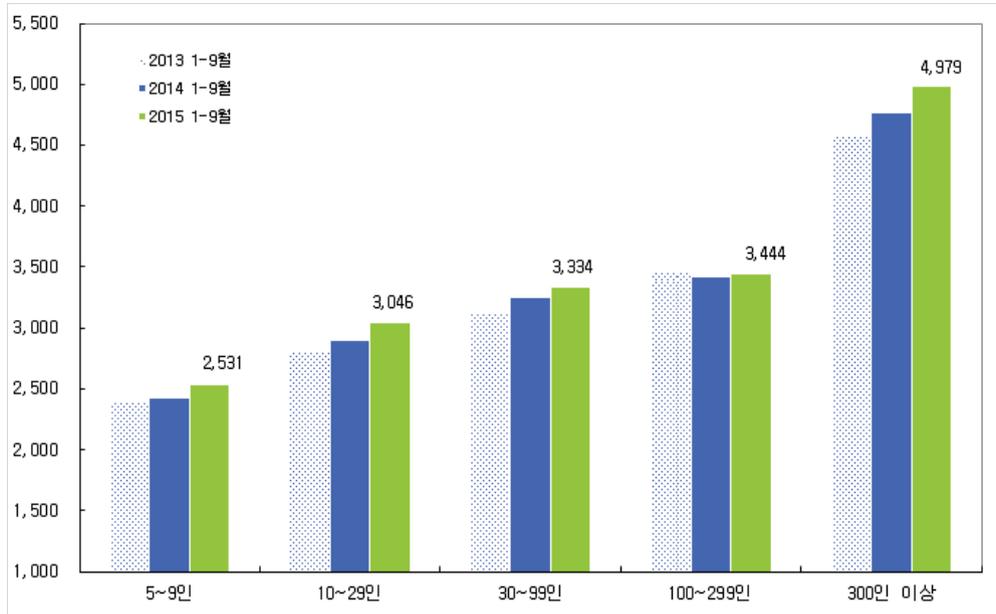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091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5%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폭 확대. 이는 특별급여의 증가폭 확대에 기인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979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4.4% 상승함. 이는 초과급여의 증가에 기인
- 장기적으로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의 흐름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 비상용근로자의 1~9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대비 2.4% 상승한 1,418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는 0.3% 상승한 1,372천 원임.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9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67.1시간(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15년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9시간 증가한 167.1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2.8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60.6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0%, 3.3% 증가했으며, 초과근로시간(12.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1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
- 2015년 1~9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6% 증가한 171.4시간임.
  - 2015년 1~9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7.1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7%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114.4시간)는 전년동평균대비 2.4% 감소함.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9월 평균		1~9월 평균	
			9월		9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0.3 (-0.9)	162.2 ( 4.5)	171.4 ( 0.6)	167.1 ( 3.0)
상용 종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5.8 (-0.6)	167.7 ( 5.1)	177.1 ( 0.7)	172.8 ( 3.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2.9 (-1.0)	155.5 ( 5.4)	164.3 ( 0.9)	160.6 ( 3.3)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 3.2)	12.9 ( 4.9)	12.2 ( 0.8)	12.9 ( 0.0)	12.3 ( 0.8)
비상용근로시간	122.5 ( 0.2)	117 (-4.5)	117.2 (-4.8)	108.6 (-5.4)	114.4 (-2.4)	110.8 ( 2.0)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9월 평균		1~9월 평균	
			9월		9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0.3(-0.9)	162.2( 4.5)	171.4( 0.6)	167.1( 3.0)
광업	180.6(-2.5)	179.4(-0.7)	178.1(-0.6)	169.3( 5.9)	178.2( 0.1)	174.1( 2.8)
제조업	185.0(-0.8)	185.4( 0.2)	184.2( 0.5)	174.2( 5.2)	185.0( 0.4)	179.7( 3.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69.2(-2.8)	158.5(-2.9)	170.3( 0.7)	168.5( 6.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7.0(-2.5)	169.5( 3.2)	176.8(-0.1)	174.0( 2.7)
건설업	152.7( 0.1)	148.5(-2.8)	147.8(-3.1)	139.9( 1.2)	146.7(-0.7)	142.7( 2.0)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1.1(-0.8)	163.2( 5.4)	171.7( 0.4)	166.2( 1.8)
운수업	177.8(-2.1)	173.1(-2.6)	172.1(-2.8)	167.2( 1.9)	172.9( 0.5)	169.2( 1.2)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3.7(-1.1)	175.0( 5.3)	174.3( 0.3)	174.3(-0.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1.3(-0.6)	152.8( 5.5)	163.2(1.2)	159.5( 4.4)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 0.4)	162.5( 0.6)	152.7( 7.1)	163.3( 0.5)	158.8(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8.7(-1.3)	183.0( 3.8)	191.4( 1.4)	188.2( 2.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1.9(-0.6)	154.0( 4.9)	163.5( 1.0)	158.9( 3.2)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70.8(-0.3)	164.2( 5.7)	171.8( 0.6)	168.6( 2.7)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 0.9)	151.7( 1.2)	140.6( 7.4)	151.5(-0.1)	144.5( 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8.3(-2.0)	161.8( 4.7)	170.4( 1.2)	166.9( 3.2)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 0.6)	158.0( 0.6)	150.9( 4.3)	159.6( 1.0)	156.6( 3.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2.1(-3.3)	151.4(-0.7)	162.4( 0.2)	159.1( 5.1)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9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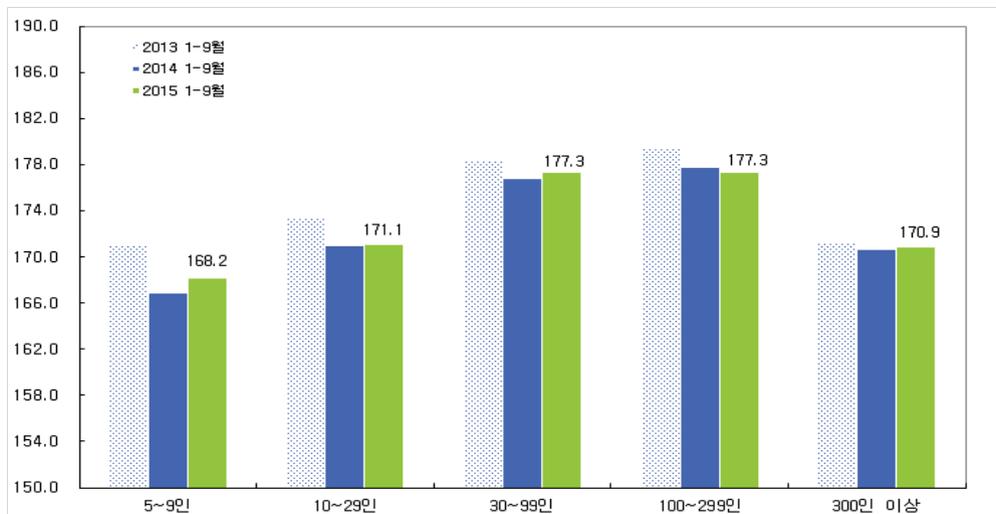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9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음식숙박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 이외 산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증가함. 특히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3%, 168.5시간),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5.1%, 159.1시간)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총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함.
  - 2015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8.2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79.7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1~9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4%)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191.4시간)으로 나타남. 이외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 등으로 나타남.
  - 반면 전년동평균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0.7%)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146.7시간) 산업으로 나타남.
- 2015년 9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9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중소기업(5~299인)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7.9시간(2.9% ↑)이며,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에서의 총근로시간은 163.6시간(3.5% ↑)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기업체는 162.3시간(1.9% ↑), 10~29인 기업체는 166.7시간(3.5% ↑), 30~99인 기업체는 172.0시간(3.7% ↑), 100~299인 기업체는 170.6시간(1.7% ↑)으로 나타남.
- 2015년 1~9월 평균 기업 규모별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증가함.
  - 중소기업(5~299인)의 1~9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8% 증가한 172.0시간이며,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기업체는 166.9시간(0.9% ↑), 10~29인 기업체는 170.1시간(0.26% ↑), 30~99인 기업체는 175.9시간(1.0% ↑)이었으며, 100~299인 기업체는 전년동평균과 동일한 175.7시간으로 나타남.
  - 대기업(300인 이상)의 1~9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69.1시간(0.4% ↑)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 가계수지 동향

### ◆ 2015년 3/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 증가, 소비 감소

- 2015년 3/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재산소득(7.8%), 이전소득(11.5%)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0.8%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4.7% 감소함.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함(실질소비지출은 1.2% 감소).
  - 비소비지출의 경우, 연금(1.0%), 사회보험(3.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조세(-1.3%), 비경상조세(-0.5%), 이자율 하락에 기인하여 이자비용도 6.0% 감소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함.
  - 3/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2015년 3/4분기 소득은 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근로소득은 1, 5분위에서 증가했으며(0.0~12.6%), 가처분소득은 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 1분위(7.5%)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 천 원, %, %p)

	2014		2015			
	3/4분기		2/4분기		3/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387.6	3.0	4,270.6	2.9	4,416.5	0.7
경상소득	4,245.1	3.0	4,111.5	2.1	4,280.7	0.8
근로소득	2,961.3	3.3	2,809.7	1.7	2,963.2	0.1
사업소득	866.4	1.2	854.1	-2.1	852.9	-1.6
재산소득	19.1	6.7	17.0	-6.3	20.5	7.8
이전소득	398.4	4.9	430.8	15.2	444.0	11.5
비경상소득	142.4	2.2	159.0	25.9	135.8	-4.7
소비지출	2,576.3	3.3	2,494.3	0.7	2,562.5	-0.5
비소비지출	837.6	3.7	786.8	2.0	834.2	-0.4
처분가능소득	3,550.0	2.8	3,483.8	3.1	3,582.3	0.9
흑자액	973.7	1.6	989.5	9.6	1,019.8	4.7
흑자율	27.4	-0.3	28.4	1.7	28.5	1.0
평균 소비성향	72.6	0.3	71.6	-1.7	71.5	-1.0

- 주 :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 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5) 흑자율, 평균소비성향의 증감은 %p.

자료 : 통계청(2015.11), 『2015년 3/4분기 가계동향』.

〈표 12〉 2015년 3/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가구원 수	2.45명		3.03명		3.3명		3.48명		3.58명	
가구주 연령	59.9세		49.0세		47.5세		47.1세		47.9세	
소득	1,505.0	4.6	2,930.7	2.4	4,014.3	1.0	5,286.6	1.6	8,343.0	-1.3
경상소득	1,425.0	4.4	2,859.1	2.2	3,949.2	1.1	5,181.1	1.1	7,986.3	-0.5
근로소득	640.2	8.4	1,704.2	0.0	2,629.9	-0.7	3,742.6	-0.8	6,096.6	0.2
비경상소득	80.0	7.4	71.6	9.9	65.1	-5.4	105.5	36.8	356.6	-16.4
가계지출	1,565.8	-1.2	2,501.0	0.1	3,200.3	-0.1	3,934.7	0.8	5,780.0	-1.7
소비지출	1,288.6	0.0	1,996.4	-1.0	2,482.0	-0.6	2,981.3	2.7	4,063.2	-2.7
비소비지출	277.2	-6.6	504.6	4.8	718.2	1.8	953.5	-4.5	1,716.9	0.7
처분가능소득	1,227.9	7.5	2,426.0	1.9	3,296.0	0.8	4,333.2	3.1	6,626.1	-1.9
흑자액	-60.8	58.3	429.7	17.7	814.0	5.5	1,351.9	4.1	2,562.9	-0.5
흑자율	-4.9	7.8	17.7	2.4	24.7	1.1	31.2	0.3	38.7	0.5
평균 소비성향	104.9	-7.8	82.3	-2.4	75.3	-1.1	68.8	-0.3	61.3	-0.5

- 주 : 1)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 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흑자율, 평균소비성향의 증감은 %p

자료 : 통계청(2015.11), 『2015년 3/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1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824건)보다 7건 적은 수치임.
- 지난 11월 조정성립률 53.4%
  - 지난 1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3.8%에 비해 0.4% 낮아진 수치임.

〈표 13〉 2014년, 2015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11	817	783	346	136	210	302	45	257	39	96	34	53.4
2014. 11	824	773	346	144	202	297	37	260	45	85	51	53.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0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49건)보다 156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3.8%(166건), 기각·각하·취하 비율이 66.2%(325건)를 차지함.

〈표 14〉 2014년, 2015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1	505	491	166	0	83	111	131	0	13
2014. 11	349	319	96	7	72	39	105	0	2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마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정부가 경기침체로 회사 문을 닫거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을 지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전직·재취업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목적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있음.
  - 지정 절차는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의 사업주나 사업주·근로자단체에서 신청하면, 고시에 명시한 '지정기준'을 토대로 고용지원조사단의 타당성 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1) 고용유지지원금, 2) 특별연장급여, 3) 전직·재취업 및 창업 지원, 4)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됨.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됨.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함.
  - 본 제도는 12월부터 시작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장시간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됨.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함.
- 그 밖에도 사업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함.
  - 유연근무제도나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예 :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의 40% → 100%)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를 3개월로 연장함.

〈표 15〉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유연근무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유연근무제 도입시 1인당 30만 원 지원 * 전체근로자의 5% 한도, 최대 1년간 지원
재택·원격근무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시 1인당 20만 원 지원 * 전체근로자의 10% 한도, 최대 1년간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1)」.

### ◆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입법처리에 난항

-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처리를 위해 지난달 16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두 번째 협의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소득 없이 마무리됨.
  - 노동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논의 수준에 그쳤고,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협의도 하지 못함.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노동(관련) 5대 법안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힘.
  -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9·15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대표자들이

- 참여)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긴급회의를 갖고 노사정 합의 파기를 거듭 요구함.
-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와는 다른 노동법안을 내놓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 역시 최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함.
  -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노동관련 5대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지만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강행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사정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자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짓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함.
- 지난달 18일에는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 빅딜 가능성을 경계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함.
- 지난 12월 초 여야의 원내대표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합의하는 대가로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빅딜 우려가 있다는 데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공감함.
  -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개약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의당과 노동개약 저지를 위해 세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논의도 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 두 달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달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는 △정부·공공부문 용역계약 체결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미준수시 정부·공공기관 평가 반영 △근

로감독·사용자 처벌 강화 △홍보·교육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제고 △최저임금 심의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 등 5개 항에 합의함.

- 최저임금위 구조개편이나 최저임금 수준·결정방식 같은 핵심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음.
  - 노동계는 최저임금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노사가 추천하자고 요구함.
  -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같은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영계는 이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달리 결정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사정은 지난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미합의 의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판단됨.

◆ **민주노총, 2차와 3차 민중총궐기 대회**

-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이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경찰과 대립함.
  -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놓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과 참가자들이 과격했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또 다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음.
  - 이에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집회 신고를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잇따른 진보단체와 시민단체의 집회 신고도 “2차 집회의 주제·목적·내용이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어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를 함.
  - 민주노총과 전농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열겠다는 개최 의지를 나타내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였음.
-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농 외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폭력시위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민주노총은 평화적 시위를 약속함.

- 법원은 “민주노총이 1차와 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서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해 왔음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고 주장하고, 2차 민중총궐기는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다만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 시위 도구로 쓸 개연성이 있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으면 집회장소로 가는 출발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힘.
-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우려와 달리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의 행진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까지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종료됨.
- 경찰은 차벽을 폴리스 라인으로 대신하여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두고 주최 측은 문화제를 열었다고 했으나, 경찰은 정치적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무대 발언자들의 정치적 발언 등을 이유로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여 논란이 됨.

◆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구속**

- 경찰은 지난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여 지난달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함.
-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등 8개 혐의에 추가로 소요죄\*를 적용해 한상균 위원장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힘.
  -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임.

\* 소요죄 : 다수 사람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국제노총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약 중단을 요구했고, 이어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도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함.
  -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키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구금돼 있는 노조 위원장”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라”고 말함.
  - AFL-CIO는 “이러한 일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든 관계없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과정”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서울시 공공기관 노사, 노동시간단축안전업무 직영화

-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가 노동시간단축과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합의하고,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하기로 함.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는 올해 9월부터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협약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년의무고용률을 준수해 정원 3% 이상 청년을 고용하고, 공공부문 노사 이슈인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고, 기관들은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중시하고, 임금·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하기로 함.
- 서울시와 기관 노사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관은 시민의 안전·생명과 관련한 사업을 직영화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의 단계적 정규직화도 추진함.
  -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은 “노사정서울협약에 따라 노사합의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논의 과정을 통해 노사관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큰 성과”라며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고(정규직 전환), 신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채용)로 만들어 가자는 의지가 협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KTX 승무원 해고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지난 2008년 KTX 승무원 해고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우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음.
  - 1,2심 재판부는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으므로 부당하게 해고된 오씨 등을 코레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파견 관계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
  -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허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면서도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끝났지만 일터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함.

〈표 16〉 KTX 승무원 복직투쟁 경과

	내 용
2003년	▪ 12월 - 철도청, 승객서비스 업무 분리, 흥익회에 위탁 결정
2004년	▪ 1월 - KTX 승무원 모집
2005년	▪ 12월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설립
2006년	▪ 4월 14일 - 코레일 승무원 전원 해고 통보,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 투쟁 본격화 ▪ 5월 19일 - 승무원 280여 명 정리해고
2007년	▪ 1월 1일 -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 집단해고 ▪ 2월 - KTX·새마을 승무원 공동투쟁 시작 ▪ 12월 14일 - 코레일과 KTX·새마을 승무원 '역무계약직 채용' 합의 ▪ 12월 27일 : 코레일 합의안 파기, 승무원 서울역 앞 천막농성 시작
2008년	▪ 11월 -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 12월 2일 -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 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	▪ 8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1년	▪ 8월 19일 -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소송 승소 판결
2015년	▪ 2월 26일 -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 ▪ 11월 27일 - 서울고법 원고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특별명퇴·임금피크제’ KT노조 ‘배상하라’

- KT노조가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특별명예퇴직·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KT 노사는 지난해 4월 8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함.
  - 올해 1월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사업부서 폐지와 함께 대학생 자녀학자금·교육보조비 폐지 등 복지제도 변경에도 합의했음.
  - 노사합의에 따라 KT는 같은 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4명을 명예퇴직시켰음.
- 노조 규약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T노조는 노사합의에 앞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이에 일련의 조치로 명예퇴직했거나 신설부서로 전보된 조합원들은 “노사간 밀실 합의로 퇴직이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과 노사합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음.
  -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원고 측을 대리한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이나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최근 임금피크제나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조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힘.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